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 8.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0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8. 19.
- 라. 회부일자 : 2020. 8. 19.

2. 제안이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근거 규정 신설
(제28 조 제2항)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순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 제3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인터넷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20. 8. 19.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8조 제2항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함.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제목	정보통신기기 지원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제28조		(신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취약계층에 대해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근거를 마련함.

디지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구 디지털 정보 격차¹⁾를 해소하고자 함.

1) ▫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농어촌)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
 ▫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은 정보화 진전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는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 참고로, 붙임 1의 표와 같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를 포함한 16개 자치구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및 통신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중랑구는 정보통신기기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 나머지 강북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례 제정사항이 없었음.

표2 자치구별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정 현황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제품 및 통신비 지원	정보통신제품 지원	미 지원
16	1	8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우리구의 정보격차 해소 대상인 취약계층 현황은 표3과 같이 총 41,888가구로 취약계층 전체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재정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 노트북 대여 및 사랑의 PC보급 대상자를 먼저 추진하고 향후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주변여건 변화 및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시기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표3 우리구 취약계층 현황

구분	계	저소득층	65세이상 고령층	장애인 및 다문화
가구	41,888	11,091	18,416	12,381
인원	74,155	16,024	23,434	34,697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

○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에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정보통신제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에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심도 있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우리구 취약계층 현황 1부.
3.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기본조례 비교 1부.
4. 관련법령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취약계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17,600원으로 사랑의 PC 보급대상 가구에 2년간 지원할 예정으로 사랑의 PC 보급계획(연간 100가구)으로 산정했을 때 비용발생이 초기 1년은 연간 21,120,000원이며 2년 후 부터는 매년 42,240,000원으로 추계됨
- ※ 서울시 교육청 초·중·고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비 : 17,600원/월
- ※ 가구당 2년간 인터넷 통신비 지원근거 : 사랑의 PC 유지보수 기간 2년
- 향후 5년간 인터넷 통신비 지원금액 추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분					
사랑의PC 보급가구(수)	100	100	100	100	100
인터넷통신비 지원가구(수)	100	200	200	200	200
인터넷통신비 지원금액(천원)	21,120	42,240	42,240	42,240	42,24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홍보디지털과 이현호
연 락 처	2627-1122

붙임2

우리구 취약계층 현황

□ 총 41,888가구

(2020.3.31. 기준 / 단위 : 가구, 명)

○ 저소득층

합 계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및 중복 수급자 제외)		차상위		한부모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11,091	16,024	7,578	10,369	2,422	3,118	1,091	2,537

○ 고령층(65세 이상)

금천구 인구(명)		기초연금 대상자		*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 : 61.86%				
전체	65세 이상	합계		성별		가구 유형별		
		가구	인원 (명)	남성 (명)	여성 (명)	단독가구 (명)	노인부부(명)	
							1인	2인
228,546	37,885	18,416	23,434	9,845	13,589	11,092	2,309	10,033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이하인 경우 지급

○ 장애인 및 결혼 이민자(다문화)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전체 (인원)	장애인 연금		외국인(명)			다문화 가구
	가구	인원(명)	합계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11,391	1,470	1,491	33,206	19,523	13,683	10,911

○ 우리구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2p) 자료를 토대로 우리구 복지 관련 대상자를 정책 수요자로 설정함.

○ 실제 디지털 정보 취약 계층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 실태조사 필요

붙임3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 기본조례 비교

연번	자치구명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제품 및 통신비 지원	정보격차 해소 추진 관련 근거 조항	비 고
1	강남구	○	제 33조	
2	강동구	○	제 37조	
3	강북구	×	×	
4	강서구	○	제 25조	
5	관악구	○	제 29조	
6	광진구	○	제 34조	
7	구로구	○	제 35조	
8	금천구	×	×	
9	노원구	○	제 24조	
10	도봉구	○	제 19조	
11	동대문구	○	제 28조	
12	동작구	×	×	
13	마포구	×	×	
14	서대문구	○	제 21조	
15	서초구	×	×	
16	성동구	○	제 23조	
17	성북구	○	제 28조	
18	송파구	○	제 30조	
19	양천구	×	×	
20	영등포구	×	×	
21	용산구	×	×	
22	은평구	○	제 29조	
23	종로구	○	제 34조	
24	중구	○	제 31조	
25	중랑구	통신제품 지원 ○, 통신비 지원 ×	제 23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3, 6119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
2. 정보격차의 해소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4.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